

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금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임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市 직영 시, 기존 공무원 인력 증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나, 공무원의 정원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
- 또한,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
- 가출청소년 상담·교육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
-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
-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·운영(시설물·장비 등)
-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재지 및 시설 규모

주 소	호수	전용면적	비고
도봉구 도당로 17길 34 (방학동)	301	44.32 m^2	
	302	44.32 m^2	
도봉구 도봉로 133길 8-18 (쌍문동)	301	57.43 m^2	
	302	50.63 m^2	

- 개소일자 : 2019.10.(예정)
- 이용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(남자 4명, 여자 4명)

○ 위치도



마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9.10.01. ~ 2022.09.31.)
- 위탁업무 :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·운영
- 소요예산 : 353,594천원
 - 인건비 192,604천원, 운영비 140,183천원, 사업비 20,807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바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 (☎2133-4128)